

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
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발급일자 | 처리기간 | 즉시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|
| 사업자 | 상호(대표자) | 등록번호 | | |
| | 주소 | | | |
| 매도인 | 성명(명칭) |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| | |
| | 주소 | 전화번호 | | |
| 매수인 | 성명(명칭) |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| | |
| | 주소 | 전화번호 | | |
| 매도된 자동차 | 등록번호 | 차종 | | |
| | 차명 | 형식·연식 | | |
| | 차대번호 | 원동기형식 | | |
| 매도종류 | [] 매매 [] 알선위탁 | | 매도연월일 | |
| 매도장소 | 매도금액 | | | |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었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자동차매매사업조합 귀하

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
| 첨부서류 | 1. 양도증명서 사본 1부 | 수수료 |
| | 2. 상품용 표지 1부 | 없음 |

유의사항

-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가 제시된 때,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된 때와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에는 중고자동차의 제시·매도·반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9조제1항).
-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제26호).